

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**고용허가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및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요청**

1. 최근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역 간 이동, 식당·유흥주점 방문, 주말 모임 등에서 지인 접촉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업장내 집단감염으로 번지고 있어,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모두가 방역관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
2. 이에 각 기관에서는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①타 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, ②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, ③지역별 선제검사 적극 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 등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,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유증상 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고용허가 홈페이지(www.eps.go.kr)에 코로나19 예방수칙(16개국 번역본),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(16개국 번역본), 사업장 방역수칙 자율 점검표 등 게재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

- 붙임 1.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(16개국 번역본) 1부.
2. 코로나19 감염증상 발생 시 10가지 행동수칙(16개국 번역본) 1부.
3. 미등록외국인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(16개국 번역본) 1부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수신자 지방관서(지역협력부서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일자리과장),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(외국인력국장), 한국고
용정보원장, 외국인력상담센터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기관 대표,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대표

주무관	이동하	행정사무관	최난주	외국인력담당관	전결 2021. 7. 30.
협조자				관	정해영
시행	외국인력담당관-2990			접수	
우 30117	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 7층				/ www.moel.go.kr
전화번호	044-202-7150	팩스번호	044-202-8027	/ merseum@korea.kr	/ 대국민 공개

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